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67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품 생산에 대한 비현실적인 요건을 보완함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접생산 확인시 “생산공장 인정 요건”에 대한 특례(제7조, 제8조)
- 특수한 경쟁제품에 대해 사업장밖 생산시설 인정(제10조)
- 복합기능 생산시설에 대해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생산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제11조)
- 창업초기 기업 기준에 대해 “창업지원법” 준용하여 2→3년 확대(제14조)
- 신기술(공법) 및 법정인증 제품에 대해 사전실태조사 면제(제18조, 제20조)
- 법제처 권고 “행정규칙 용어 정비” 징구하다 → 받다(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4개 세부품목에 대한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확인기준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09월 1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lsk1719@korea.k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3) 팩스 : 044-204-75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 (044) 204 - 74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각 1부